

食品衛生法中

改正法律 解説

現行食品衛生法은 1962年 1月 20日¹ 法律 第1007號로 制定公布되고 1967年 3月 20日 法律 第1921號로 第一次 改正을 行한 바 있으며, 또한 1973年 2月 16日字 法律 第2532號로 第2次 改正을 斷行하게 되었던 것이다.

원래 法律이라고하는 것은 社會現像의 變化에 따라 當該法律도 그 變化되는 現像에 貯 맞추어 改正되어야 하는 것이 通例일 것이다. 즉, 社會現像是 急發展하는데 法은 舊態依然하게 存在하고 있다면 그 法律은 實效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食品衛生法도 이와같은 時代的인 要請에서 第2次의 改正은 不可避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2月 16日字로 第2次改正된 食品衛生法은 이와같은 時代的 變遷에서 當然히 改正된 것이라고 看過할 수 없는 主要部分을 改正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食品 등을 製造, 加工하는 經營者의 側面에서나 消費者保護의 側面이나 또는 國民의 保健을 위한 衛生的 側面에서 그 改正의 主要骨子를 잘 理解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으로 生覺되며, 또한 實際로 食品營業을 運營하는데 있어서는 加一層 깊은 理解와 分析이 必要한 것으로 生覺된다.

改正된 主要骨子를 要約하여 檢討하면 다음과 같다.

1. 食品衛生法에 의한 規制對象은 “遷搬”過程

朴 奉 相
保健社會部 食品衛生課

까지 擴大하였다는 點이다.

즉 從前의 食品衛生法上 規制對象은 食品, 添加物, 容器包裝 등을 採取, 製造, 加工, 調理, 貯藏陳列 또는 授受의 경우 必要한 事項만을 規制하고 있었으나 이번 改正에는 이에 添加하여 “運搬”에 대한 規制를 插入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運搬이란 것을 規制對象으로 하였을 때 食品衛生法中 具體的인 規制內容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檢討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營業의 範圍에서 運搬을 包含시켜 食品營業中 運搬을 새로이 規制하게 되었고,
- ② 販賣禁止規定에서 運搬을 包含시켜 腐敗變質 또는 有毒, 有害한 物質이 含有 또는 附着하였거나, 病原微生物에 汚染된 食品 또는 不潔한 食品, 添加物은 運搬할 수 없게 하였으며,
- ③ 病肉 등의 販賣禁止規定에서 運搬을 包含시켜 病肉 등을 運搬하지 못하게 하고,
- ④ 規格基準을 定할 수 있는 範圍에서 運搬을 包含시켜 保健社會部長官이 國民保健上 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運搬에 대한 基準을 정할 수 있게 하고,
- ⑤ 有毒器具 등의 販賣, 使用禁止에다 運搬을 包含시켜 有毒器具 등을 運搬 못하게 하고
- ⑥ 標示基準에다 運搬을 包含시켜 標示基準에違反된 食品, 添加物을 運搬할 수 없게 하 고 또한, 製品検查結果 合格의 뜻을 標示하게 한 製品検查合格證이 없는 食品, 添加物 등을 運搬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2. 加工食品이 人體에 設使 有害하지 않더라도 그 品質의 固有性을 잃었을 때에는 販賣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點이다. 즉 例를 들면 魚肉煉製品中 “생선육”은 生鮮을 主原料로 하여 生鮮육을 製造加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콩비지 같은 것을 主原料로 하여 製造加工되었어도 現在까지는 이에 대한 衛生検查結果 有害하지 않았다. 過去에 處罰의 對象은 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이

제는 그 製品의 主成分이 바뀌어 졌거나(즉 콩비지로) 同製品의 固有의 價値를 잃게 되었을 경우 그 食品은 廉棄處分을 當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措置는 가짜 食品(거짓食品)을 防止하자는 데 그 뜻을 두고 있으며 또한 主成分과 含量未達로 營養價를 減少시키는 것을 防止하는데도 그 效果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3. 誇大廣告禁止規定을 新設하고 製品의 標示事項에서 醫藥品과 混同할 憂慮가 있는 標示를 禁止하도록 하여 消費者保護를 期하자는 것이다.

즉 이제까지 標示基準(製造年月日, 營業許可番號, 營業所의 所在地, 製品名 등)違反만을 規制하던 것을 擴大하여 消費者를 지나치게 현혹시키는 誇大 또는 虛偽의 廣告를 모두 國束의 對象에 넣어 消費者保護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른 誇大廣告의 細部의 範圍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여 질 것이다. 一例를 듣다면 過去의 여러 食品廣告에서 “이 食品은 皮膚美容에 좋다” “이 食品은 運動前後 疲勞回復에 좋다” “含有되어 있는 食品, 添加物이 特効의 藥”인 것처럼 醫藥의 効能效果를 標示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4. 食品衛生管理人과 食品 또는 添加物의 製造, 加工業者에게 衛生管理 및 品質管理에 관한義務를 強化하였다는 點이다.

즉, 從前에는 食品衛生管理人을 두어야 할 營業種類와 食品衛生管理人의 資格만을 規制하였던 것이나 이제는 食品 또는 添加物의 製造나 加工을 하는 營業者는 食品衛生管理人的 業務를 妨害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食品衛生管理人으로부터 당해 製造加工業所에서 業務遂行上 必要한 要請을 받을 때에는 正當한 理由없이 이를 拒否할 수 없도록 하는 注意規定을 두고 있으며 이를 違反한 때에는 處罰의 對象이 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다.

5. 食品營業에 從事하는 者는 “衛生講習”을

반도록義務化하였다는點이다.

즉 食品 또는 添加物의 採取, 製造, 加工, 調理, 貯藏 또는 販賣하는 營業에 從事하는 사람은 健康診斷과 衛生講習을 義務의으로 받도록 하여 從事��에는 恒時 健康診斷書와 衛生講習畢證을 所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現在 까지 從事者는 健康診斷만을 받도록하고 있는데 追加하여 衛生講習을 義務의으로 받게 한 것이다. 衛生講習의 實施方法, 기타 必要한 具體의 인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여지겠지만 全國 192個 保健所의 食品衛生監視員을 監視團東業務와 並行하여 指導啓蒙事業에도 力點을 두게 될 것이다.

6. 營業施設의 衛生 等級基準을 定하도록 하는點이다.

즉, 現在까지는 各業種에 따라 年間定期監視回數에 따라(例: 食品接客業所는 年6回, 製造加工業所는 年 4回 등) 監視를 行하였던 것을, 衛生監視의 結果 당해 營業所의 衛生等級을 定하도록하여, 가령 1等級이면 年 6回 監視를 받았던 것을 年 3회로 監視回數를 줄이는 反面 衛生 등급이 下等級에 해당되면 年 6回의 監視回數를 年 12회 程度의 監視回數를 늘려서 監視를 行하게 한다는 것이다. 結果의으로는 衛生狀態가 良好한 業所에는 法定監視回數를 줄이고 不良한 業所에 對하여는 法定監視回數를 늘려 指導監督한다는 것이다. 물론 衛生등급의 基準 其他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여 지겠지만 限定된 監視人力을 最大限 活用하고 良好한 施設에 對하여는 不必要한 監視를 줄이고 그 代身不良한 業所에 對하여는 監視를 增加하여 業所의 衛生의 指導와 그 管理를 向上시킨다는 데目的이 있는 것이다.

7. 品質管理義務와 生產實績 등을 報告하게 하는點이다.

즉, 法第19條의 規定에 依據 食品衛生管理人을 두어야할 食品 및 添加物의 製造나 加工을

하는 營業者는 原料管理, 製造管理 기타 品質管理上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營業者는 앞으로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品質管理, 原料管理 및 製造管理에 對한 所定의 書類를 備置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같은 管理的行爲는 現在까지 營業者 스스로 行하는 것과는 달리 必須의 義務規定으로 改正된 것으로서 이를 違反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이를 違反한 때에는 應分의 行政措置를 當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同條에서는 亦是 食品衛生管理人을 두어야할 營業의 營業者는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依하여 당해 食品 및 添加物의 生產實績 등을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道知事에게 報告하도록 義務化하고 있으므로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定期의 生產實績報告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 亦是 義務規定으로 設定하고 있으므로 이의 報告를 하지 않을 때에는 당연히 義務違反으로 處罰의 對象이 되는 것이다.

8. 保健社會部長官은 公益上 또는 食品, 添加物의 需給調節上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食品營業許可를 制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法第23條의 2의 規定은 營業許可를 制限하는 規定으로서 公益上 또는 需給調節上 極히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 限하여 그 營業의 許可를 制限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9. 不良食品 및 無許可食品의 製造加工에 使用한 器具, 容器는 押留 또는 廢棄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點이다.

즉, 食品衛生監視員은 現在까지 無許可食品業所를 摘發하였을 때에는 行政上即時強制 같은 措置를 取하지 못하고 食品衛生法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한 無許可業所 만을 同法罰則에 따라 刑事告發하는 것이 最上の手段으로 措置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改正에는 이와같은 告發措置와 並行하여 당해

無許可食品을 製造, 加工, 調理의 分野에서 使用되었던 器具容器包裝 그리고 그 無許의食品은 押留하거나 廢棄處分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無許可食品製造加工 또는 調理하는 業所는 本條項에 따라 가차없는 團束이 行하여질 것이며 이로 因하여 無許可食品業所는 一掃될 것으로 생각된다.

10. 保健社會部長官은 公益上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食品衛生上 重大한 危害가 發生할 虞慮가 있을 때에는 食品營業者에 대하여 必要한 指導와 命令을 할 수 있게 하였다는 點이다.

즉, 現在까지는 食品衛生法이나 營業許可時에 附則으로써 措置된 事項만을 營業者는 遵守하면 되었으나 이와같은 行政命令權이 新設되어 食品衛生法에서 規制되어 있지 아니하는 卫生上危害를 事前에 예방하기 위하여 保健社會部長官은 하나의 예방行政命令權을 發動할 수 있게 된 것

이다.

이밖에도 改正된 食品위생법은 제34조 위임사항 중 「調理士 및 營養士의 자격시험 면허」를 「調理士의 資格시험과 調理士 및 營養士의 면허」로 폭을 넓혔으며 제40조 3항 委任規定도 保健所長에게까지 확대했다.

종래의 法은 保健社會部長官 · 서울特別市長 · 釜山市長 · 道知事의 權限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區廳長 · 市長 · 또는 郡守에게만 위임하도록 했던것을 保健所長에게까지 위임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이는 보건위생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치다.

끝으로 이번 改正된 食品衛生法中 改正法律을 改正되기 前과 改正後의 것을 條文別로 比較하면 다음 表와 같다.

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 改正前後對照表

改 正 前	改 正 後
第2條(定義) ①~⑦省略 ⑧ 이 法에서 營業이라 함은 食品 또는 添加物을 採取, 製造, 加工, 輸入, 調理, 運搬, 貯藏 또는 販賣하거나 器具 또는 容器包裝을 製造輸入 또는 販賣하는 業을 말한다.	第2條(定義) ①~⑦現行과 같음 ⑧ 運搬 또는 販賣하거나 食品 또는 添加物에 關する 器具 容器 또는 包裝을 製造 輸入 運搬……
第3條(販賣禁止) 다음 각號의 1에 該當하는 食品 또는 添加物을 販賣(販賣 以外의 授與도 포함한다. 以下 같다)하거나 販賣한 目的으로 採取, 製造, 輸入, 加工, 使用, 調理 또는 貯藏하거나 陳列하지 못한다. 1~4省略	第3條(販賣禁止) ① 貯藏 또는 運搬하거나…… 1~4(現行과 같음) ② 食品 또는 添加物로부터 그 主要成分 또는 营養成分의 全部나一部를 減少 또는 除去하거나 食品 또는 添加物에 다른 物質을 混合함으로써 그 固有의 價值를 잃게 된 食品 또는 添加物에 대하여도 또한 前項과 같다.
第4條(病肉等의 販賣禁止) 保健社會部令의 定하는 疾病에 걸렸거나 그의 念慮가 있거나 또는 死亡한 牛馬·綿羊·山羊·豚 其他 保健社會部令의 定하는 動物을 말한다)의 肉, 骨, 浮汁·臟器 또는 血	第4條(病肉等의 販賣禁止) 動物의 肉·骨·乳汁……

改 正 前	改 正 後
<p>液을 食品으로서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u>採取</u> <u>輸入, 加工, 使用, 調理 또는 贯藏하거나</u> 陳列하지 못한다.</p> <p>第5條(化學의合成品의 販賣禁止)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 化學의合成品 以外의 化學의合成品과 製劑를 食品의 添加物로 使用하거나 이를 含有한 食品을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u>製造, 輸入, 加工, 使用,</u> <u>調理 또는 贯藏하거나</u> 陳列하지 못한다.</p> <p>第6條(基準과 規格) ① 省略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基準과 規格이 定하여졌을 때에는 食品 또는 添加物은 그 基準에 맞는 方法에 依하여 製造, 加工, 使用, 調理 또는 保存되어야 하며, 그 基準과 規格에 맞지 아니하는 食品 또는 添加物은 製造, 輸入, 加工, 使用, 調理 또는 保存하거나 販賣하지 못한다.</p> <p>第7條(有毒器具等의 販賣使用禁止) 有毒 또는 有害物質이 合有되었거나 附着되어 人體의 健康을 害할虞慮가 있는 器具 및 容器, 包裝과 食品 또는 添加物에 接觸됨으로서 人體의 健康을 害할虞慮가 있는 器具 容器 및 包裝을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製造, 輸入하거나 또는 營業上 使用하지 못한다.</p> <p>第8條(基準과 規格) ① 省略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基準과 規格이 定하여졌을 때에는 器具와 容器 包裝은 그 基準에 맞는 方法에 依하여 製造하여야 하며 그 基準의 規格에 맞지 아니하는 器具와 容器, 包裝은 <u>製造, 輸入 또는 販賣하거나 營業上 使用하지 못한다.</u></p> <p>第9條(標示基準) ① 省略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標示에 關한 基準이 定하여진 食品 添加物 器具와 容器, 包裝은 그 基準에 맞는 標示가 없으면 이를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陳列하거나 營業上 使用하지 못한다.</p> <p>第10條(虛偽標示禁止) 食品添加物 器具와 容器 包裝에 關하여 國民保健에 危害를 끼칠虞慮가 있는 虛偽標示 또는 其他의 虛偽標示를 하지 못한다.</p> <p>第14條(無標示品의 販賣禁止) 第12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製品檢査를 받아야 할 食品添加物 器具와 容器, 包裝은 그 製品檢査에 合格한 뜻의 標示가 없으면 이를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陳列</p>	<p><u>調理 贯藏 또는 運搬하거나.....</u></p> <p>第5條(化學의合成品의 販賣禁止)</p> <p><u>또는 運搬하거나.....</u></p> <p>第6條(基準과 規格) ① 現行과 같음 ②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製造, 輸入, 加工, 調理, 贯藏, 運搬, 保存 또는 陳列하지 못한다.</p> <p>第7條(有毒器具等의 販賣使用禁止)</p> <p><u>製造, 輸入, 贯藏, 運搬 또는 陳列하거나.....</u></p> <p>第8條(基準과 規格) ① 現行과 같음. ②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製造, 輸入, 贯藏, <u>運搬, 陳列하거나.....</u></p> <p>第9條(標示基準) ① 現行과 같음 ② <u>陳列 또는 運搬하거나.....</u></p> <p>第10條(虛偽標示 및 誇大廣告의 禁止) ① 食品添加物과 器具, 容器 및 包裝의 名稱 製造方法 및 品質에 關하여는 虛偽標示 또는 誇大廣告를 하지 못하며 食品添加物의 標示에 있어서는 醫藥品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標示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食品添加物의營養價 및 成分에 關하여도 또한 같다.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虛偽標示와 誇大廣告의範圍其他必要한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p> <p>第14條(無標示品의 販賣禁止)</p> <p><u>운반 또는 陳列하거나.....</u></p>

하거나 营業上 使用하지 못한다.

第19條(食品衛生管理人) ① 省略

- ② 食品衛生管理人은 當該 施設에 있어서 그 管理에 屬하는 食品 또는 添加物에 關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한 命令 또는 處分에 違反되자 아니하도록 그 食品 또는 添加物의 製造 또는 加工에 從事하는 者를 監督하여야 한다.
- ③ 食品衛生管理人的 資格과 其他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第20條(遊興營業從事者の 登錄等) ① 飲食店營業中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業種(以下 遊興營業이라 한다)을 除外하고는 食品의 加工調理等 労役以外의 遊興에 從事하는 者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遊興營業에 從事하고자 하는 者는 서울特別市·釜山市 또는 道에 登錄하여야 하며 遊興營業는 登錄되지 아니한 者를 营業에 從事시킬 수 없다.

③ 前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對象者的 範圍 登錄의申請, 登錄證의 交付, 登錄의 取消와 遊興營業者 및 本條에 依하여 登錄된 從事者の 遵守事項 其他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21條(健康診斷) ① 食品 및 添加物의 採取, 製造加工, 調理, 貯藏 또는 販賣하는 营業에 從事하는 者는 健康診斷을 받어야 한다.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健康診斷을 받은 結果 他人에게 危害를 끼칠 虧慮가 있는 疾病이 있다고 認定된 者는 그 营業에 從事하지 못한다.

③ 营業者는 前 2項의 規定에 依하여 健康診斷을 받은 結果 他人에게 危害를

第19條(食品衛生管理人) ① 現行과 같음

② 食品衛生管理人은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되자 아니하도록 그 食品 또는 添加物의 製造加工에 從事하는 者를 指導監督하여야 하며 製品 및 施設의 衛生管理를 하여야 한다.

③ 食品 또는 添加物의 製造나 加工을 하는 营業者는 前項의 食品衛生管理人の 業務를 妨害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業務遂行上 必要한 要請을 받은 때에는 正當한 事由없이 이를 拒否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現行 ③項과 같음.

第19條의 2(品質管理 및 報告) ① 前條 第1項 本文에 該當하는 食品 및 添加物의 製造나 加工을 하는 营業者는 原料管理 製造管理 其他 品質管理上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营業者는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食品 및 添加物의 生產實績等을 保健社會部長官·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20條(遊興營業者와 從事者) ① 大統領으로 定하는 遊興飲食店營業을 하는 業所 以外의 業所에는 遊興에 從事하는 者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遊興飲食店營業을 하는 者 및 遊興에 從事하는 者의 遵守 事項 其他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削除)

第21條(健康診斷 및 衛生講習) ①從事하는 者는 健康診斷 및 衛生講習을 받아야 한다. 다만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者는 衛生講習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認定된 者 및 衛生講習을 받아야 할 시기에 받지 아니한 者는 그

③ 健康診斷 및 衛生講習을 받지 아니한 者

改 正 前	改 正 後
<p>끼친 우려가 있는 疾病이 있다고 認定된 者를 그 營業에 從事시키지 못한다.</p> <p>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健康診斷의 實施方法 및 營業에 從事하지 못하는 疾病의 種類와 其他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p> <p>第22條(施設基準) 飲食店營業 其他 大統領으로 定하는 營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施設基準에 適合하여야 한다.</p> <p>(新設)</p>	<p>④ 健康診斷 및 衛生講習의 實施方法斗</p>
<p>第23條(營業許可) ①~③ 省略</p> <p>④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營業許可를 받은 者가 그 營業을 開業·休業·再開業 또는 廃業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依하여 保健社會部長官,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p>	<p>第23條(營業許可) ①~③ 現行과 같음</p> <p>④</p> <p>그 營業을 休業·再開業</p>
<p>第23條의 2(營業許可의 制限)</p> <p>4. 新設</p>	<p>第23條의 2(營業許可의 制限)</p> <p>4. 公益上 또는 食品 添加物의 수급조절상 그 許可를 制限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어 保健社會部長官이 指定하는 營業에 該當될 때.</p>
<p>第24條(廢棄處分等) ①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는 營業者가 第3條乃至 第5條 第6條 第2項 第7條 第8條 第2項乃至 第10條의 規定에 違反하였을 때에는 營業者 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食品 添加物 器具와 容具 包裝을 廉棄하게 하거나 其他 營業者에 對하여 食品衛生上의 危害를 除去하기 為하여 必要한 措置를 下 것을 命하고 또는 營業許可의 全部 또는一部를 取消하거나 期間을 定하여 營業을 停止시킬 수 있다.</p> <p>(新設)</p>	<p>第24條(廢棄處分等) ①</p> <p>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食品 添加物 器具와 容器包裝을 押留 또는 廉棄하게 하거나</p> <p>② 保健社會部長官·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는 第23條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製造 또는 加工한 食品 添加物 또는 器具, 容器, 包裝이나 이에 使用한 器具·容器·包裝等을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押留 또는 廉棄하게 할 수 있다.</p> <p>第25條(營業許可等의 取消) ①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는 營業者가 第9條 第2項 第14條 第19條 第1項 第20條 第21條 第3項 第23條 第3項 第4項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依한 第23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條件에 違反하였다는 때에는 營業許可의 全部 또는一部를 取消하거나 期間을 定하여 營業을 停止시킬 수 있다.</p>

改 正 前	改 正 後
② 省略	② 現行과 같음
③ 省略	③ 現行과 같음
第26條(施設의 改修命令等) ①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는 营業者가 그營業의 施設에 關하여 第22條의 規定에 依한 施設基準에 違反하였을 때에는 期間을 定하여 施設의 改修를 命할 수 있다. ②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는 营業者가 前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內에 施設의 改修를 하지 아니한 때는 营業許可의 全部 또는 一部를 取消하거나 期間을 定하여 营業을 <u>停止시킬 수 있다.</u> ③ 新 設	第26條(施設의 改修命令等) ① 期間을 定하여 施設의 改修를 命하거나 营業을 <u>停止시킬 수 있다.</u> ② 保健社會部長官·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는 营業者가 前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內에 施設의 改修를 하지 아니하거나 营業停止命令을 違反한 때에는 营業許可의 全部 또는 一部를 取消할 수 있다. ③ 保健社會部長官은 公益上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 또는 食品衛生에 重大한 危害가 發生하였거나 發生할 우려가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第23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 必要한 指導와 命令을 할 수 있다.
(新 設)	第26條의 2(營業許可等의 取消要請) 保健社會部長官은 食產物加工處理法·水產業法 또는 酒稅法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 또는 免許를 받은 者가 第3條乃至第6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當該許可 또는 免許를 管轄하는 機關의 長에게 그 許可 또는 免許의 全部 또는 一部를 取消하거나 期間을 定하여 营業을停止시킬 것을 要請할 수 있다. 다만, 酒類의 경우에는 保健犯罪團束에 關한 特別措置法이 定한 有害基準에 該當되는 경우에 限한다.
第30條(營養士의 免許) 营養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로서 保健社會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1. 省 略 2. 营養士資格試驗에 合格한 者 3. 省 略	第30條(營養士의 免許) 1. 現行과 같음 2. 删 除 3. 省 略
第34條(委任事項) 調理士 및 营養士의 資格試驗 免許 其他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34條(委任事項) 調理士의 資格試驗과 調理士 및 营養士의 免許 第40條의 3(委任規定) 이 法에 依한 保健社會部長官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의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依하여 區廳長, 市長 또는 郡守에 委任할 수 있다.
第40條의 3(委任規定) 이 法에 依한 保健社會部長官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의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依하여 區廳長, 市長, 郡守 또는 保健所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區廳長, 市長, 郡守 또는 保健所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